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11월 27일, 최보윤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11월 2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1. 1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2025. 2. 27) 상정, 축조심사, 의결

(수정가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3. 5)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최보운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및 보조 용도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관광 복지사업이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국민관광 복지사업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단체여행 추진에 한정되어 있어 장애인의 관광 참여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교통 및 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아 이들의 관광 접근성 및 편의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관광지 내 교통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8호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전완희)

가. 관광진흥개발기금 용도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관광지 등
교통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 추가(안 제5조제3항제8호의2 신설)

(1)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교통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8호의2 신설).

(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기금의 용도) ①·② (생략)	제5조(기금의 용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설></u>	<u>8의2.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교통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u>
9. ~ 10. (생략)	9. ~ 10. (현행과 같음)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3) 검토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장애인·고령자 및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¹⁾
 - 2015년부터 관광지의 주차장, 이용·편의시설, 화장실, 보행로 시설 등을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동반가족 등이 이용하기 쉽도록 개선하는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였고,²⁾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을 보조하는 투어케어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대상 여행체험 프로그램 운영, 고령자와 취약계층인 청소년의 여행 지원 프로그램 등도 추진 중임.³⁾
 - 또한, 2022년부터는 민간기업 등과의 협업을 통해 관광지와 숙박·식음료·쇼핑 등 편의시설 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관광취약계층이 제약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무장애 연계성 강화’ 사업도 추진 중임.⁴⁾

1)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장애인·고령자 관광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고령자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024.12.31. 제420회(임시회)제3차 본회의에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의결되어, 제47조의3에 따른 관광 활동 지원의 대상이 ‘다자녀가구’로 확대되었음(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예정).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열린관광지 조성: '15년부터 '23년까지 132개소 조성, '24년 30개소 조성 중

3) 투어케어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23년 240명,
장애인·고령자 대상 여행체험 프로그램: '23년 556명
고령자의 주도적 여행을 장려하는 ‘꿈꾸는 여행자’ 운영: '23년 720명
취약계층 청소년 문화관광체험 여행 지원: '23년 6,500명

4) 2022년 강릉시, 2024년 울산광역시를 선정하여 지원 중임.

○ ‘2023년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2023년도 만 15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의 국내여행 경험률은 95.5%, 1인 평균 국내여행 횟수는 6.47회임. 이에 비해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국내여행 경험률이 90.3%, 1인 평균 국내여행 횟수 3.77회,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국내여행 경험률이 90.4%, 1인 평균 국내 여행 횟수가 3.64회로, 고령자, 저소득층의 경우 관광활동 비율이 전 국민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2023 장애인 관광 실태조사(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장애인 국내여행 경험률이 55.9%로 장애인의 경우 관광활동 비율이 전 국민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었음.

- 특히 동 조사에서는 장애인 여행 활성화를 위한 고려사항으로 관광지까지 교통편의성 개선(1순위, 41.1%), 관광지 내 이동 편리성 개선(2순위, 34.9%), 장애인 편의시설의 신규 조성·유지·관리·개선(5순위, 28.2%) 등이 꼽혀, 장애인이 관광활동을 불편 없이 영위하기 위해서는 교통수단에서의 편의 제고와 편의시설의 설치·개선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그런데 현행법상 장애인·고령자 및 관광취약계층의 관광지원 사업의 재원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로 장애인 등을 위한 관광지 등에서의 ‘교통 및 편의시설의 설치사업’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현행법 제5조제3항은 관광기금의 대여 및 보조 대상 사업으로 관광정보 제공사업, 관광홍보사업, 관광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등만을 규정하고 있음.⁵⁾

○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관광지 등에서의 “교통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이라는 구체적인 보조대상 사업군을 명시함으로써, 현재 추진 중인 장애인·고령자,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교통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⁶⁾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등에 대한 관광 접근성, 편의성 등을 보완함으로써 이들의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이 교통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의 대상지를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로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곳⁷⁾으로 일반적인 의미의 관광지점(spot)⁸⁾의

5)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추진 중인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무장애 연계성 강화 사업’의 경우 제5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사업”으로서 추진 중이라고 설명함.

6)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무장애 연계성 강화 사업’에는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임산부 등 관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편의시설 개보수, 시티투어버스 운영, 렌터카·택시 등 민간사업자 참여지원 등을 통한 관광교통 편의성 강화, 교통수단 승하차 시설 설치

7)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일부에 불과한 바, 교통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 대상지를 관광지 등으로 한정하는 것은 장애인 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광 접근성·편의성 등을 개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또한, 현행 제5조제3항제6호에서 기금의 용도로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공공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에 관광지 등에서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사업은 포괄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임.
-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의 경우에도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조성된 관광지·관광단지 등의 지역이 아닌 광범위한 관광지점 단위로 추진 중임.⁹⁾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교통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의 대상지를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7.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11.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2024년 말 기준 관광지는 225개소, 관광단지는 51개소, 관광특구는 35개소(14개 시·도)가 지정되어 관리 중임.

8) 「2023년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집」(문체부)에 따르면, “관광지점”은 「관광진흥법」 등 관광관련 법령*을 근거로 분류된 주요관광지점 범위** 중 지자체 관광진흥 정책상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대표지점으로 선정된 곳으로 관광목적의 비일상적 이용이 주된 목적인 시설 또는 공간을 의미하며, 2023년 기준 2,752개소임.

* 관광관련 법령: 관광진흥법, 문화재 보호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온천법, 자연공원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39개 법령

** 주요관광지점 범위: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등(관광진흥법),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 등(문화재 보호법), 박물관·미술관 등(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관광농원·주말농원 등(농어촌정비법 등)

9) 예를 들면,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의 경우 강릉시, 울산광역시에 속한 관광지점 전반을 대상으로 추진 중임.

관광지 등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관광 활동 지원을 위한 교통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보다 폭넓게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은 교통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의 수혜자를 ‘장애인 등 소외계층’으로 한 바,¹⁰⁾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령 해석의 일관성과 사업추진에서의 혼선 방지를 위해 ‘소외계층’이라는 용어를 「관광진흥법」 제47조의4, 제47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취약계층’¹¹⁾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0) 개정안은 현행 제5조제3항제8호의 국민관광 복지사업의 대상이 ‘장애인 등 소외계층’임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11) 「관광진흥법」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7조의5(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에게 여행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임오경)

수정가결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일부 체계·자구 수정이 있었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3. .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관광진흥법」에 ‘무장애 관광’의 정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개정안의 사업 내용을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사업’으로 포괄하여 반영하며, ‘소외계층’을 ‘관광취약계층’으로 수정함(안 제5조제3항제8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의2를 삭제한다.

8.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편의시설 설치 등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사업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5조(기금의 용도) ①·② (생략)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 7. (생략) 8. 장애인 등 소외 계층에 대한 국민 관광 복지사업 <신설>	제5조(기금의 용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 ~ 8. (현행과 같음) 8의2.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을 위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교통 및 편익 시설 설치사업	제5조(기금의 용도)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 ----- ----- ----- -----. 1. ~ 7. (개정안과 같음) 8. 장애인 등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편익시설 설치 등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사업 <삭제>
9.·10. (생략)	9.·10. (현행과 같음)	9.·10. (개정안과 같음)

④ · ⑤ (생략)	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같음) ④ · ⑤ (개정안과 같음)
------------	----------------------	------------------------

법률 제 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편의시설 설치 등 「관광진흥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금의 용도) ①·② (생략)	제5조(기금의 용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u>국민관광 복지사업</u>	8.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편의시설 설치 등 「관광진흥법」 제2조제13호 에 따른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사업
9.·10. (생략)	9.·10. (현행과 같음)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